#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78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최종윤·조오섭·김민철

허종식 · 남인순 · 강선우

유관석 • 김진표 • 한병도

김승남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다른 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
	<u>한 자</u>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
	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